

##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80일
------	-----	-----------

신청인	목재생산업 등록번호	목재생산업 종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본사주소	전화번호/Fax
	공장주소	전화번호/Fax

신청 기술	기술 명칭
	적용제품 명칭(모델 명칭)
	신기술의 범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지정을 받으려는 신기술에 관한 요약서 및 설명서(신규성·진보성·친환경성·현장 적용성 등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산업재산권이나 국내외 공인기관의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3.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수수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금액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명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산림청장	→	기술 분석 한국임업진흥원	→	심의·결정 산림청 (목재이용위원회)	→	지정서 발급 산림청
---------------	---	------------	---	------------------	---	---------------------------	---	---------------